

〔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7월 5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년 7월 5일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7년 7월 11일(제1차 총무위원회)
- 마. 의안번호 : 제2007 - 22호

2. 개정이유

사회적문제인 고령화 급진전과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하여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연 소득 1,200만원이하)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중 담보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25% 감면

4. 검토보고 요지

-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 지원을 위해 역모기지 활성화 여건조성이 필요하며

- 2006년 2월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역모기지제도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기로 확정된 이후 후속적 조치로써 2007년 4월 11일 관계법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동 동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역모기지를 제도와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 역모기지를(reverse mortgage loan)은 장기주택 저당대출이라고 하는데,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받는 방식임.
 - 감면대상자 및 감면내용은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연간 소득이 1,200만원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9조 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5% 경감하도록 하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신설조문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사항으로써 조례개정과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등 별다른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